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가단510628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성

피고 2 내지 4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노한나

변론 종결2024. 9. 5.

판결 선고2024. 10. 3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171,175원 및 그 중 177,172,741원에 대하여 2008. 11. 11.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4. 1. 22.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2022. 3. 2.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2022. 3. 7. 접수 제309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12.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170,000,000원, 보증기간을 2006. 6. 12.부터 2008. 6. 11.까지로 하여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200,000,000원의 대출금 상환채무를 보증원금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피고 회사, B, C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외에 위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추가보증료,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원금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08. 11. 11. 소외 은행에 대출 원리금 177,172,741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 B,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22199호로 위 변제 등에 따른 구상금(채권보전비용 726,690원, 추가보증료 1,415,890원 포함)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피고 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315,321원 및 그 중 177,172,741원에 대하여 2008. 11. 11.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4. 1. 22.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선행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원고가 선행 판결에 따라 피고 회사, B,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마.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6.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G(상속지분 13분의 3), H, I, J와 피고 D, C(상속지분 각 13분의 2)이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7. 망인의 위 법정상속인들 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 C과 G은 2022. 3. 2.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지분(피고 C 13분의 2, G 13분의 3)을 증여(이하 피고 C이 피고 D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D은 2022. 3. 7. 이 사건 증여계약 등을 원인으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사. 피고 회사, B,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 보증료는 1,415,890원, 법적절차비용은 3,582,54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번호 있는 것은 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 C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대위변제금 177,172,741원 및 추가보증료 1,415,890원에다 법적절차비용 3,582,544원을 합한 182,171,175원(= 177,172,741원 + 1,415,890원 + 3,582,54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77,172,741원에 대하여 2008. 11. 11.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4. 1. 22.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앞서 본 증거에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외에 다른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과 피고 D은 자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피고 D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9696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피고 D에게 자기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한 이상, 피고 C은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D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은 J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 2018. 10. 20.경부터 J의 성년후견인이었던 점, ② 피고 C의 주거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인 반면에, J의 주거지는 광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장애가 있는 자매인 J를 돌보는 것이 어려워져 피고 D이 J를 돌보기로 하면서,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D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D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 C이 증여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전경세

별지